

I. 주요 개정 사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고시)」 등 4개 규정 개정

주요 반영사항	내 용
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14건)	
【행정부담 완화】	
① 사업비 사용관련 행정부담 완화	- 연구과제추진비와 영리기관의 간접비 한도내 증액을 전담기관 승인사항에서 전담기관에 통보사항으로 변경(공통요령, 사업비요령, 평가관리지침)
② 보고서 온라인 등록시 직인 생략	-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으로 보고서 등록·제출시 직인생략 가능(평가관리지침)
③ 대기업의 민간부담 현금 납부기간 연장	- 협약일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평가관리지침 부칙개정)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④ 창업 초기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사업비 요령, 평가관리지침)
⑤ 비영리기관 파견 중소기업 연구원 지원	- 중소기업 연구원이 출연연, 전문연, 대학 부설연구소 파견 연구시 인건비 현금 지원(사업비요령)
⑥ 신규 채용 연구원의 학력 조건 폐지	- 학력 조건(전문학사 이상) 폐지(사업비요령)
⑦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 현금지원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사업비요령, 평가관리지침)
⑧ 신규채용 30% 이상시 이에 상응한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완화	- 신규채용에 상응(30%이상 조건 폐지) 하여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지원(사업비요령)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적용

주요 반영사항	내 용
⑨ 인적자원 중심의 업종 인건비 지원 강화	-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 기술 등의 업종은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기존 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지원(사업비요령)
⑩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지원 확대	- 현행 신규채용 인력(100% 지원) 외에 기존 인력은 인건비의 50% 현금 지원(사업비요령)
【사업비 집행의 재량 확대】	
⑪ 영리기관의 간접비 상향 조정	- 직접비(현물 제외)의 현행 5%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사업비요령)
⑫ 혁신성과 과제 사업비 잔액 후속 연구 지원	- 전담기관장의 승인 받아 잔액은 성과활용, 장비유지 보수 등 해당 과제관련 후속연구 비용으로 사용(공통요령, 사업비요령)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⑬ 협약체결 기간 연장	- 협약체결 기간을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2개월로 연장(공통요령)
⑭ 해외체재비 지원 신설	-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해외파견시 해외체재비 지원(사업비요령)
2 그간의 산업기술 R&D 정책 반영(19건)	
【기술금융 활성화방안('14.5)】	
① 창업초기 기술혁신 기업 지원 강화	-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하여 높은 부채비율(500% 이상)로 인해 R&D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점 개선(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R&D 혁신방안('14.6)】	
② 민간 매칭방식 개선	-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공통요령) - 민간부담 현금은 각 수행주체가 연도별 사업비 중 정해진 비율만큼 납부
③ 심층평가제도 도입	-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평가, 심층평가를 위한 사전 서면검토 절차신설(평가관리지침)
④ 기술개발 목표변경 절차 간소화 (기획보고서 제출 생략)	- 목표변경 요청시 기획보고서 제출 → 수행기관 목표변경 승인요청서 및 관련 세부자료 제출로 간소화(공통요령)

주요 반영사항	내 용
⑤ ‘산업 R&D 조정위원회’ 신설	- 산업기술 R&D 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강화를 위해 산업R&D조정위원회 운영근거 마련(공통요령, 평가관리지침)
⑥ 시장을 고려한 R&D과제 선정	- 시장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참여시켜 시장성·사업성 검토 강화(공통요령)
⑦ 평가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	- 기술 중분류가 일치하는 이종사업간 통합평가 근거 마련(공통요령) - 평가위원 구성시 기술 중분류 기준 50% 이상 일치토록 구성(공통요령, 평가관리지침)
⑧ 평가방식 다양화	- 토론평가 및 서면/발표 평가 등을 혼합한 평가 방식 추가(공통요령, 평가관리지침)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14.8)】	
⑨ 사업비 부정사용 신고자 보상금 재원 근거마련	- 사업비 목적외 사용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 비용을 기평비에서 집행 근거 마련(공통요령)
⑩ 수행기관 자체적인 통제·관리 강화	- 과제협약시 과제 수행기관 내부에서 사업비 통제·관리방안 제출(평가관리지침)
⑪거래처의 건전성 확인	- 연구시설·시작품 외부제작 의뢰시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등 제출(사업비요령)
【R&D 성과제고 특허관리 강화(‘14.8)】	
⑫ 기업의 IP 경영 역량 평가 반영	- 과제평가지표에 특허전담부서, 전담인력과 삼극특허 실적 여부 등 반영(평가관리지침)
⑬ 특허동향조사 전면 확대 실시	- 기획대상 모든 과제 및 자유공모 과제에 대해 특허동향조사 및 선행특허조사 실시(공통요령, 사업비요령, 평가관리지침)
【IP 실시권 확산방안(‘14.9)】	
⑭ R&D과제 非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실시권 확산	- 비영리기관은 과제 참여기업에 1년 6개월간 우선 실시권 부여 후 非참여 중소기업이 기술실시를 요청하면 허락(공통요령) - 비영리기관 단독수행 과제의 성과물 확산을 위해 업종별 단체의 중개역할 근거 마련(공통요령)

주요 반영사항	내 용
【전담기관의 책임성 강화('14.9)】	
⑮ 사업비 정산업무 관리·감독 강화	- 정산업무 처리기한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내로 설정, 전담기관이 정산업무 실태 자체점검 근거마련(공통요령, 사업비요령)
⑯ 평가 중립성 및 공정성 제고	- 전담기관 담당자가 기재하는 사전검토표 및 사전 실태조사 검토의견서에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 판단 배제(평가관리지침)
【산업 R&D 사업비 지원기준 개선방안('14.11) 등】	
⑰ 연구수당 지급기준 개선	- 과제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 개인별 최대 지급한도 설정(사업비 요령) - 참여연구원은 연구수당만 지급(연구개발 능률성과급 미지급)
⑱ 장비 및 연구시설에 대한 현물 산정 기준 개선	- 현행 장부가의 최대 20% 이내에서 현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입 5년 이내 장비에 한해 구입가의 최대 20% 산정(사업비 요령) - 자산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시제품·시작품 현물로 산정 가능
⑲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차등지원 근거 마련	-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 등을 반영하여 간접비율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사업비 요령)
③ 규정운영상 효율성 등 개선(9건)	
【평가 단계】	
① 성과확산을 위한 결과보고서 공개 절차 명확화	- 최종보고서 원문공개, 단, 기술료 징수과제는 전담기관 방문 열람형태로 공개(공통요령)
② 이의신청 기간을 알기쉽게 명확화	- 평가결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 통보한 날 다음날부터 10일(평가관리지침)
③ 신규평가시 사전검토 사항 보완	- 품목지정 과제에서 신청과제가 해당 품목에 미해당시 사전 제외 처리(평가관리지침) - 부채비율, 유동비율 산정의 예외조건을 결산 기준 업력 2년 미만 기업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으로 개선(평가관리지침)

주요 반영사항	내 용
④ 기술개발 표준서식 개정	- 신청서식, 협약서식, 보고서식, 평가서식 개정(평가관리지침)
⑤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강화	- 사업비 집행점검, 정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시 위탁정산기관 담당회계사 참여 근거 마련(공통요령)
⑥ 용어의 정의 추가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개념평가 등 정의 신설(공통요령, 평가관리지침)
【수행 단계】	
⑦ 장비구입비 관리 강화	- 계획된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미구입시 전담기관 승인(공통요령, 평가관리지침)
⑧ 최종년도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 제출기한 조정	-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45일 이내 제출토록하여 최종평가지 사업비 오남용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공통요령, 사업비요령)
⑨ 선정평가지 가점 기준 정비	- 가점기준(11종) 중 여성연구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15년말까지 일몰 설정(평가관리지침 부칙개정)
④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부처 규정 개정사항 반영(6건)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14.8 등, 미래부)】	
①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45일 이내(공통요령, 평가관리지침)
② 특허성과 관리 강화	- 국내외 등록된 지식재산권 포기시 권리 소멸전 그 사실을 전담기관에 통보(공통요령)
③ 참여제한 기간 설정 기준 명확화	- 참여제한 기간중 새로운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기산일은 진행중인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로 함(공통요령)
④ 중견기업 적용 법규 변경	- 산업발전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공통요령)
⑤ 보안과제 확정절차의 전문성 강화	-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기술과제(보안과제) 해당여부를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 요청 근거 마련(보안관리요령)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14.4, 미래부)】	
⑥ 수행기관간 현금거래 인정 예외 사례 마련	-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면 수행기관 상호간 현금거래 허용(사업비 요령)

Ⅲ. 부문별 주요 개정내용

1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행정부담 완화

- ① 사업비 사용관련 행정부담 완화(공통요령 제27조2항 개정, 사업비 요령 제11조12항, 제12조1항, 사업비요령 별표 제4호, 평가관리지침 12협약나 개정)
 - 연구과제추진비 및 영리기관(기업) 간접비의 한도내 증액을 전담 기관 승인 사항에서 통보사항으로 간소화
- ② 보고서 온라인 등록시 직인 생략(평가관리지침 보고서식 개정)
 - 연차, 단계, 최종, 기획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으로 등록·제출시에는 직인을 생략
- ③ 대기업의 민간부담 현금 납부기간 연장(평가관리지침 부칙개정)
 - 담당부서가 많아 연구비 행정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민간부담 현금 납부기간을 현행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 ④ 창업 초기 중소기업 지원 강화(사업비요령 제5조5항3호 신설, 평가관리지침 12.협약-가-1)-라) 신설)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으로 성장경로 지원을 위해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 ⑤ 비영리기관 파견 중소기업 연구원 지원(사업비요령 제5조5항5호 신설)
 -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기술습득 지원을 위해 출연연, 전문연 및 대학부설연구소에 파견하여 공동연구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지원
- ⑥ 신규 채용 연구원의 학력 조건 폐지(사업비요령 제5조8항1호 개정)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신규채용 연구원의 학력 조건인 '전문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폐지하여, 학력에 상관없이 연구원으로 채용 가능
- ⑦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사업비요령 5조5항1호 신설, 평가관리지침 12.협약-가1)-다) 개정)
 -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지원 대상기업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 ⑧ 신규채용 30% 이상시 이에 상응한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제도 완화(사업비요령 제5조8항2호 개정)
 - 신규채용 인력이 참여연구원의 30% 이상인 경우 그에 상응하여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현금 지원이 가능한 조건을 완화하여, 신규채용에 상응하여 기존 인력에도 인건비 현금계상을 허용하고 적용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
- ⑨ 인적자원 중심의 업종 인건비 지원 강화(사업비요령 제5조8항3·8호 개정)
 -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 기술 등 인적자원 업종의 중소기업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편성·집행하는데, 적용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

⑩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지원 확대(사업비요령 별표 제3호 개정)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에 대한 인건비 현금 지원을 현행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를 현금으로 지원

* 연구지원전문가 : 연구비 관리·정산, 물품·기자재 관리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4일)을 수료한 자

사업비 집행의 재량 확대

⑪ 영리기관의 간접비 상향 조정(사업비요령 제6조3항 개정)

- 영리기관(기업)의 간접비* 계상기준이 출연연 등 비영리 기관의 1/3 수준에 불과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영리기관의 간접비 편성비율을 현행 직접비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 조정

* 간접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등

⑫ '혁신성과' 과제 사업비 잔액 후속연구 지원(공통요령 제33조1항5호 개정, 사업비요령 제17조7항 신설)

- 우수 성과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혁신성과'(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 과제는 후속연구 지원을 위해 사업비 집행잔액을 미회수하고, 전담기관장의 승인 받아 성과활용, 장비유지 보수 등 해당 과제 후속연구 비용으로 지원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⑬ 협약체결 기간 연장(공통요령 제26조2항 개정)

-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경우 외국기관과의 협약체결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기간을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 2개월로 연장

* 실제로 해외기관과의 협약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영문번역, 해외 협약당사자 국내방문·협의 등에 1개월 이상 소요

⑭ 해외체재비 지원 신설(사업비요령 별표 제2호 개정)

- 선진 기술 취득과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연구원의 해외 파견 연구시 해외체재비를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지원

* 해외체재비 :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공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지급

- 해외체재비 = 체재비 산정내역(자체기준 단가 또는 실소요금액) X 참여율

2

그간의 산업기술 R&D 정책 반영

기술금융 활성화방안('14.5)

① 창업초기 기술혁신 기업 지원 강화(평가관리지침 10.신규평가-나-2)-마 개정)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하여 높은 부채비율(500% 이상)로 인해 R&D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점 개선

산업기술R&D 혁신방안('14.6)

② 사업비 매칭방식 개선(공통요령 제24조2항 개정)

- (출연금 지원기준)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
 - 미래 기술개발 또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TRL 5단계)는 정부 지원비중을 현행 유지하고,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로서, 연구비 회수기간이 짧은 혁신제품형 과제(TRL 6~8단계)는 정부 지원비중 축소
 - * 사업 공고문에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단계 표기 예정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정부 R&D 참여기업의 책임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수행주체가 연도별 사업비 중 정해진 비율만큼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

< 사업비 매칭방식 개선내용 >

구 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50% 이하	33%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	75% 이하	6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	75% 이하	67%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또한, 중소·중견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사업별·과제별 정부출연금 배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정부의 예산,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변경 근거 마련(공통요령 제24조4·5항 신설)
- ### ③ 개념평가, 사전 서면검토 등 심층평가제도 도입(평가관리지침 5. 추진절차-가,나 개정 및 다. 신설, 10. 신규평가-가 신설)
- (개념평가) 창의적 아이디어가 최우선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위해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를 먼저 평가**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본 사업계획서 제출

- * 총 4페이지 이내로,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 위주로 간략히 제출
-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선정과제수 대비 3배수 까지 본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하고 30일 이내 사업계획서 제출토록 함

○ (사전 서면검토) 기존 선정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선정평가 실시

- * 평가위원회는 사전 서면검토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 서면검토 결과에 대한 보완자료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

④ 기술개발 목표변경 절차 간소화(공통요령 제33조1항1호 개정)

○ 기술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목표 변경 절차를 기존에는 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를 간소화 하여 기술개발 목표변경 신청서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로 변경

⑤ ‘산업R&D 조정위원회’ 신설(공통요령 제5조의2 신설, 평가관리지침 7. 지원과제의 발굴-나-3) 개정)

○ 산업R&D 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강화를 위해 “산업R&D 조정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R&BD 전략, 신규과제 추진방향, R&D 사업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⑥ 시장을 고려한 R&D과제 선정(공통요령 제6조1항 개정)

○ R&D과제 선정평가지 시장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석시켜 시장성·사업성 검토를 강화

⑦ 평가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공통요령 제7조12항 신설, 평가관리지침 4. 주요 용어 정의-다-26 및 6.추진체계-나 개정)

○ 기술분류가 일치 하는 이종(異種) 사업 과제간 통합 평가 근거 마련과 과제의 기술 분류와 평가위원의 전문분야가 기술 중분류 까지 일치하는 평가위원이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평가위원회 구성

- 과제 이해도, 평가 일관성 제고를 위해 책임평가위원*이 평가 참석하는 근거 마련

* 책임평가위원 : 선정된 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

- ⑧ 평가방식 다양화(공통요령 제7조8항, 제33조2항 개정, 평가관리지침 10.신규평가-다, 16.연차평가 및 단계평가-가 개정)

-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개발 위험도가 높은 과제는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병행하는 혼합평가 방식 추가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14.8)

- ⑨ 사업비 부정사용 신고자 보상금 재원 근거마련(공통요령 제46조 4항 신설)

- 사업비 목적외 사용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금을 기획평가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⑩ 수행기관 자체적인 통제·관리 강화(평가관리지침 협약서식 8호 신설)

- 수행기관 스스로의 사업비 사용 감독을 통한 부정사용 행위 예방 차원에서 과제 협약후 1개월 내 수행기관 자체의 사업비 통제·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협약서를 협약 첨부문서로 제출

- ⑪ 거래처의 건전성 확인(사업비 요령 별표 8호 개정)

- 연구시설, 시작품 제작 등 외부제작의 경우 페이퍼컴퍼니 등 거래처의 건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제출 의무화

R&D 성과제고 특허관리 강화('14.8)

- ⑫ 기업의 IP 경영역량 평가 반영(평가관리지침 평가서식 중 평가표 개정)
- IP 경영역량을 평가 전주기(선정-연차-최종)에 반영하여 특허 역량이 있는 기관이 과제 수행기관 선정에 유리하고, '질 높은 특허' 창출이 가능하게 평가서식 개선
 -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선정평가 항목에 IP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 신설
 - * 특허경영관리 역량(특허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여부 등), 국내외 IP등록실적, 삼극특허 수 등 확인
 - (중간평가) 특허전략 수립 및 시행여부 확인
 - (단계평가) 지재권 관리부서 인력 및 지재권 보유 현황 확인
 - (최종평가) 삼극특허, 표준/물질특허 출원 및 등록실적을 평가에 반영
- ⑬ 특허동향조사 전면 확대 실시(공통요령 제18조1항 개정, 사업비요령 별표 제2호 개정, 평가관리지침 서식개정)
- 특허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총수행기간 3년 이하의 기획과제를 비롯해 자유공모 과제에도 선행특허와 특허 동향조사를 실시
 - 자유공모 과제는 신청기관이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문서로 제출하며, 기획과제는 전담기관이 직접 실시

IP 실시권 확산방안('14.9)

- ⑭ 성과확산을 위한 R&D과제 非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실시권 확산(공통요령 37조의2 6~8항 신설)

- 비영리기관이 과제수행 결과에 따라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기존에는 과제 참여기업이 IP 실시권을 독점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제 참여기업에 1년 6개월간 우선 실시권 부여 후 非참여 중소기업이 기술실시를 요청하면 허락

* 또한, 중소기업에서 받는 로열티는 정부납입 기술요율 이내로 합의토록 함

- 비영리기관은 단독 수행과제에서 소요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공지하며 업종별 단체는 회원사의 기술실시를 위해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담기관의 책임성 강화(*14.9)

- ⑮ 사업비 정산업무 관리·감독 강화(공통요령 제34조4항 개정, 사업비요령 제20조9·10·12항 신설)

- 전담기관이 협약기간 종료 후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집행잔액, 집행불인정 금액 등 정산금을 회수 후 국고에 납입하는 정산업무 처리기한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 내로 규정

- 전담기관이 분기별로 정산업무를 자체 점검토록 함

- ⑯ 평가 중립성 및 공정성 제고(평가관리지침 평가서식 중 사전검토표 및 사전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서 개정)

- 전담기관 담당자가 평가전에 실시하는 사전검토 서식을 주관적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개정

구분	현행	개선(안)
작성 가이드	·작성 가이드가 없어 담당자의 주관적 의견제시 가능 예시) 부적절, 적정, 미흡, 불량	·객관적 사실만 명시하고 주관적 판단 용어를 배제토록 가이드 제시 예시) 확인필요, 검토요망
작성 항목	·사전검토표 : 종합검토의견 작성 ·검토의견서 : 연구환경, 기술성, 경제성, 사업비 및 종합검토의견	·사전검토표 : 기타 특이사항으로 변경 ·검토의견서 : 항목 간소화 및 기타 특이사항 작성토록 개정

사업비 지원기준 개선방안('14.11) 등

⑰ 연구수당 지급기준 개선(사업비요령 별표 제2호 및 제4호 개정)

- (과제 평가결과 반영) 과제성과를 반영한 연구수당 지급을 위해 연구수행이 미흡한 경우 연구수당을 감액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연차평가 / 단계평가	중단(성실수행), 기종료(성실수행)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미지급(불인정)
최종평가	성실수행(60~70점)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 수행(60점 미만)	미지급(불인정)

- (연구원 1인에게 과도한 지급 방지) 개인별 연구수당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지급받은 인건비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기관 총 연구수당의 50% 초과 할 수 없음(단, 2인 이하는 예외)
- (성과급 중복지급 예방) 간접비내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지원인력에만 지급하고 참여연구원은 미지급
 - * 참여연구원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

⑱ 장비 및 연구시설에 대한 현물 산정기준 개선(사업비요령 제5조2항 개정, 사업비요령 별표 2호, 서식 제8호 개정)

- (현물 산정기준 변경) 현행 장부가의 20%이내에서 현물 산정하던 기준을 구입한지 5년 이내의 장비 및 연구시설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 산정으로 개정
- (최대 현물 산정금액 변경)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장비 및 연구시설 현물금액을 장부가의 최대 50%까지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입가의 최대 30%로 변경

- (현물 관리 강화) 현물의 이월은 불가하며,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현물로 인정하고, 사업비 정산시 현물 사용 상세 내역서 제출
- ⑱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차등지원 근거 마련(사업비요령 제6조 4항 신설)
- R&D과제의 성과제고를 위해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율 산정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을 반영하여 간접비율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규정운영상 효율성 개선

평가단계

- ① 성과확산을 위한 결과보고서 공개 절차 명확화(공통요령 제37조1항 개정)
- 최종보고서 원문을 공개하되 기술료 징수과제는 전담기관 방문 열람형태로 공개 가능
- ② 이의신청 기간을 알기쉽게 표현하여 명확화(평가관리지침 6.추진체계-다-3), 10.신규평가-바)-2), 16.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가-10), 나 - 11), 17.최종평가-나)-6) 개정)
- 현행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에서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 다음날부터 10일로 개정
- ③ 신규평가지 사전검토 사항 보완(평가관리지침 10.신규평가-나-2) 개정)
- 품목지정 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자의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전 지원제외로 처리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미적용 기업의 업력 기준을 결산 기준 업력 2년 미만 기업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으로 개정
- ④ 기술개발 표준서식 개정(기술개발지침 표준서식)
- (신청서식) 기 수행한 국가 R&D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을 표기토록 개정, 심층평가를 위한 개념계획서 신설 등
 - (협약서식) 비영리기관의 소유 IP의 과제 非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실시권 확산관련 조문 신설(협약서), 1천만원 이상의 장비, 3백만원 이상의 재료비 표기, 시작품 관련 내역을 상세 표기(사업계획서) 등
 - (평가서식) 연구조직, 사업화 실적 등 기업 연구역량 및 사업화 평가를 강화 등
- ⑤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강화(공통요령 제7조7항 개정)
- 사업비 집행점검, 정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시 위탁 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⑥ 용어의 정의 추가
- 품목지정 정의 신설(공통요령 제2조19호 신설)
 - * 품목지정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과제유형 구분을 위한 해당 정의 신설 (공통요령 제2조 39·40호 신설)
 - *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 개념평가 도입에 따른 정의 신설(평가관리지침 4.주요 용어 정의-다-5) 신설
 - *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신규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

수행단계

- ⑦ 장비구입비 관리 강화(공통요령 제27조2항 개정, 평가관리지침 12.협약-나-3) 개정
 -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또는 연구시설로 변경 외에 계획된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미구입의 경우에도 전담기관의 승인을 의무화
- ⑧ 최종년도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 제출기한 조정(공통요령 34조1항 개정, 사업비 요령 제16조 1항 개정)
 - RCMS(실시간 사업비관리시스템) 적용과제는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을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조정하여 최종평가지 사업비 오남용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
- ⑨ 선정평가지 가점 기준 정비(평가관리지침 부칙개정)
 - 현행 가점 기준(11종) 중 여성연구원 참여관련 가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효성이 낮은 가점은 15년말을 기준으로 일몰설정
 - * 혁신성과 과제, 여성연구원 관련, 기술이전 우수, 우수성과로 장관 포상 등

4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부처 규정 개정사항 반영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14.8, 미래부)

- ①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공통요령 제32조4항 개정, 평가관리지침 17. 최종평가-가 개정)

- 최종보고서 제출기간을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연장하여 행정부담 완화
- ② 특허성과 관리 강화(공통요령 제35조7항 제4호 신설)
- 특허 성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특허 포기시 권리 소멸전 전담 기관으로 통보 의무화
- ③ 참여제한 기간 설정 기준 명확화(공통요령 제44조1항 개정)
- 참여제한 기간 중 새로운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로 하여 참여제한 기간 중 새로운 참여제한 기간 설정시 시작일 기준 명확화
- ④ 중견기업 적용 범위 변경(공통요령 제2조9의3 개정)
- 중견기업법 제정에 따라 중견기업의 정의를 「산업발전법」(제10조의 2 제1항의 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정 '14.1, 시행 '14.7)」(제2조 1호)으로 변경
- ⑤ 보안과제 확정절차 보완(보안관리요령 제10조3항 신설)
- 전담기관은 신청과제가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전략물자 관리원 또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14.4, 미래부)

- ⑥ 수행기관간 현금거래 인정되는 예외 사례 마련(사업비요령 별표 제4호 개정)
-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및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또는 수행기관 간 집행한 시험분석료에 한하여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수행기관 상호간 현금거래를 허용

부칙

① 공통 운영요령

- 본 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출연금 지원기준(제24조 제2항), 민간부담금 분담기준(제25조 제4항), 실시계약 체결(37조의 2 제5항~7항) 내용은 2015년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
- 중견기업, 대기업 정의 조항 변경내용은 2015년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본 개정안 시행이전 과제는 해당 공고시 내용을 적용)
- 유효기간 설정 : 제26조 제8항,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14호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 유지.

② 사업비 요령

- 본 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제5조 제5항, 제6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별표 4호의 개정 부분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이 요령 시행 이후 도래하는 차년도 사업비 산정 및 집행시점)부터 적용

③ 평가관리지침

- 본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협약시 대기업은 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약속서” 제출시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에 같음(기존 1개월→3개월로 확대)
- 유효기간 설정 : 가점에 대한 일몰 설정. 10.-마-1)-가), 라), 마), 사), 아), 자)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 유지.